2025년 재외동포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

재외동포청 공고 제2025-39호

재외동포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18일 재외동포청장

1. 선발예정인원 (4개 분야, 총 4명)

지원코드	채용 분야	선발인원	근무예정부서(근무지)
인턴01	제도	1명	동포지원제도과(인천)
인턴02	국내동포	1명	국내동포지원TF(인천)
인턴03	전시기획	1명	아주러시아동포과(인천)
인턴04	전산	1명	동포교육문화지원과(인천)

※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(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)

가. 근무조건

- o (신 분) 청년인턴(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
- o (계약기간) '25.10.1. ~ '25.12.31.(3개월)
 - ※ 시작일은 채용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o (보 수) 월 2,096,270원(식비 포함)
 - ※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 지급.
- o (후생복지) 4대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
- o (근무시간) 주 40시간(주5일, 일별 09:00~18:00, 휴게시간 12:00~13:00)

나. 주요 업무 내용

지원코드	채용 분야	담당 업무
인턴01	제도	ㅇ 법률 개정 보조, 해외제도 조사, 정책 연구자료 정리 등
인턴02	국내동포	o 제도·정책 및 통계 정리, 정책연구 및 사례 조사 자료 정리 o 지자체·동포단체 협력 관련 지원 o 각종 행사 운영 지원 및 현장 출장 보조 등
인턴03	전시기획	ㅇ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전시 기획 지원 등
인턴04	전산	o 스터디코리안(재외동포 대상 한국어, 문화, 역사 교육 사이트) 운영 지원, 홍보 및 콘텐츠 아이디어 제안 등

※ 주요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

2. 응시 자격

가. 응시자격 요건 [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('25.9.10.) 기준]

- o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19세이상~34세이하)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
 - ※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「병역법」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
 - ▶ 군복무기간 1년미만 : 1세 / 1년이상 ~ 2년 미만 : 2세 / 2년이상 : 3세 연장
- ㅇ 채용 결격사유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 - ❖ 채용결격사유(재외동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8조)
 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/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7.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재외동포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
- ❖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제11조(가족 채용 제한)
 - 1. 소속 고위공직자 / 2.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
 - 3.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 - 4.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- ㅇ '23년 이후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2회 이상 참여 이력이 없는 자
- 나. 가점 사항 [원서접수 마감일('25.8.28.) 기준](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)
 - ㅇ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인정
 - ❖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
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**다문화가족** 구성원
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**장애인**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**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**
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3. 시험 방법

가. 서류전형

- o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*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(동점자 발생 으로 서류전형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,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)
 - * 서류전형 기준 : 인턴지원서
-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5. 9. 5.(금) 예정
 - 재외동포청 홈페이지(www.oka.go.kr), 나라일터(www.gojobs.go.kr)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

나. 면접전형

-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'정책제안서'를 제출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정책제안서 주제는 재외동포청의 주요 정책 중에서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작성(재외동포청 홍보 리플릿 참고)
 - ※ 정책제안서는 별도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
- ㅇ 정책제안 내용 구두 발표(5분), 관련 질의 응답(5분) 진행
 - 평정요소를 매우 우수·우수·보통·미흡·매우 미흡으로 평정,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

4. 시험 일정

- 원서접수 : 2025. 8. 18.(월) ~ 8. 28.(목) <u>18시</u>
-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: 2025. 9. 5.(금) 예정
- 서류전형 합격자 정책제안서 등 서류 제출 : 2025. 9. 5.(금) ~ 9. 9.(화) 13시
- ㅇ 면접시험일 : 2025. 9. 10.(수) 예정
 - ※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
-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 : 2025. 9. 12.(금) 예정
 - ※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 합격자 명단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(www.oka.go.kr), 나라일터(www.gojobs.go.kr)에 공고
 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- ※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·포기·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5.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

가. 제출일시 및 방법

○ 제출기간 : 2025. 8. 18.(월) ~ 2025. 8. 28.(목) <u>18시</u> ※ '25. 8. 28.(금) 18시 이후에 접수된 응시원서는 불인정 처리

○ 제출방법 : 관련서류는 e-mail로만 접수(접수 확인메일 발송 예정)

- e-mail 제출 주소 : choi4941@korea.kr

※ e-mail 제목은 반드시 '성명(지원코드_채용분야)'[예 : 홍길동(인턴01_제도)]으로 기재

나. 제출 서류

구분	서류	비고
	제출서류 목록 1부	o 별지서식 제1호
	청년인턴 지원서 1부	o 별지서식 제2호
	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	ㅇ 별지서식 제3호
공통사항 (필수 제출)	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1부	o 별지서식 제4호
	가족관계증명서 1부	
	주민등록초본 1부	
	* 병역사항,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되도록 발급	
	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	
	* 근로복지공단 "고용-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	

※ 제출서류는 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명 및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

다.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추가 제출 서류 안내

ㅇ 제출대상 : 서류전형 합격자

ㅇ 제출기간 :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('25. 9. 5.예정) ~ '25. 9. 9.(화) 13:00까지

○ 제출방법 : 제출서류는 전자파일 형태로 e-mail로만 접수(접수 확인메일 발송 예정)

- e-mail 주소 : choi4941@korea.kr

※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서명하여 pdf로 반드시 제출, 서명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

※ e-mail 제목은 반드시 "청년인턴 서류전형합격_성명(응시번호)"

[예: 청년인턴 서류전형합격 홍길동(인턴01-1)]"으로 기재

구분	서류	비고		
	제출서류 목록 1부	o 별지서식 제5호		
공통사항 (필수 제출)	정책제안서 1부	ㅇ 별지서식 제6호		
	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	ㅇ 별지서식 제7호		
개별사항 (해당자에 한함)	서류전형 가점 사항 증빙서류			

※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추가 제출 증빙서류는 **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** 제출하며, 제출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.

6. 유의 사항

- 응시자는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하며,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
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
- o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o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, 합격취소·결격사유 발생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,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.
- o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.
- o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(☎032-585-3286)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별지 제1호>

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(응시자 전원)

응시번호					
*	응시자 작성X				

지원코드	채용분야	성명	연락처
			* 휴대전화 번호 기재

□ 제출란에 ○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

연번	서류명	비고	제출
1	청년인턴 지원서 1부	별지2호 서식	
2	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	별지3호 서식 (동의시 ✔ 표시 필수)	
3	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	별지4호 서식	
4	가족관계증명서 1부		
5	주민등록초본 1부	등본이 아님에 주의	
6	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	온라인 발급방법 참고하여 제출	

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 2025년 월 일

작성자(응시자) : (인/서명)

청년인턴 지원서

응시반	호	* 채용담당자 기재	지원코드			채용분	<u>+</u> 0‡
성명		생년웙	힘이		연락처	휴대전화	
		0 L i	= 2		친국시	이메일	
가점	사항	□ 다문화	가족, 장애인, [;]	저소 득층	· , 한부모기	속, 북한이틸	주민 중 1개 이상 해당자

○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

- 해당 기관 및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
-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, 이 인턴 경험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술

◎ 직무 관련 전문성 획득을 위한 활동 내용

- 지원한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 및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서술
- 출신학교, 자격증, 시험(어학 등)성적 등은 언급하지 말고 행동과 경험 중심으로 작성

◎ 문제 해결 경험

- 일상생활, 학교, 아르바이트, 동아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했던 경험 서술
-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서술

◎ 소통 및 협업 능력

-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낸 경험 서술

◎ 기대하는 점 및 각오

- 인턴십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과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서술
- ㅇ 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요령(※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)
-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(글자크기 : 11, 글자체 : 맑은고딕, 줄간격 : 120%)
-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작성 금지
- 학력, 경력, 자격증, 시험성적 등 작성 금지
- 작성 금지사항을 기입할 경우 탈락 등 불이익 조치 가능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5조,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. (1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근로자 채용 및 관리 (2) 개인정보 수집 항목(필수) : 성명, 생년월일, 휴대전화(핸드폰)번호, 전자우편(이메일), 주소, 응시자 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(3)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™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
2.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본 기관에서는 청년인턴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(고유식별번호)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(1)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목적 : 청년인턴 채용 관련 (2) 고유식별번호 수집 항목 : 주민등록번호 (3) 고유식별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○ 보존사유 : 청년인턴 채용 및 관리 ○ 보존기간 : 채용 후 퇴직일까지 ○ 보존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18, 23, 24조, 시행령 제18, 19조 □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위와 같이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🗆 동의함 🗆 동의하지 않음
본인이 서명·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, 이에 동의하십니까? 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
2025년 월 일
성명 : (서명)

재외동포청장 귀하

<별지 제4호>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가조 궤요 제하 어브 화이서

• 해당하는 [1에	✓ 표시를 합니다.	5 세한 어구 먹다시					
.,		기관명	채용방법	채용직위	· (직급)			
-11 0 = 1 = 1		재외동포청	공개채용	청년인턴	<u> </u>			
채용기관		채용사유						
		2025년 재외동포청 청년인턴 채	용					
채용대상지	L	성명	주소					
	1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	정일			
(확인인)			OLEL					
		가족	채용 제한 확인사항	·				
Ę		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 관 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					
① 가족채용		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 관 '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시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					
② 예외 해당 여부	공	•	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작 하고 있는 경우인가?		[] 예 [] 아니오			
		· · · · · ·	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 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역					

채용대상자(확인인) 유의사항

① "가족채용"의 가족은 「민법」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(서명 또는 인)

년

참고

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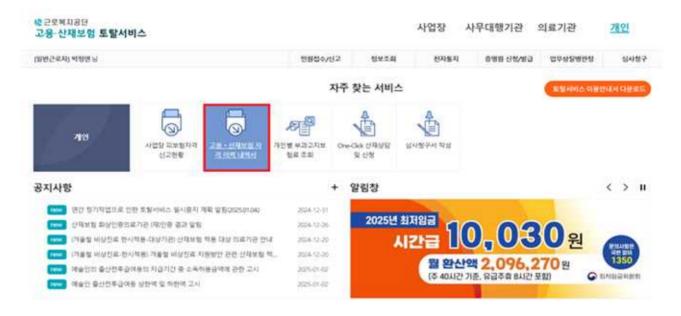
● 근로복지공단 '고용·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' 접속 (https://total.comwel.or.kr)



② 개인 → 일반근로자 선택 →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로그인



3 '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' 선택



- 4 보험구분 중 '고용' 선택 → 조회구분 중 '상용' 선택 → 조회
- ⑤ 직종포함여부 '예' 선택 → '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(전체 이력 인쇄)′ 신청 선택

메뉴승강 화면인쇄 (1) 화면인쇄인내 Home > 증명된 신청/발급 > 고용 • 신재보험 자격 이렇 내역서 + 마이메뉴 추가 는 필수업력 항목입니다. 본 자르는 고등산재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,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고용산재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- 보험구분 조희구분 ○ 산재 ● 교용 상용 ○ 일용 이력내역서 발급 직중포함여부 ◎ 예 ○ 아니오 ① 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위의 [자격관리 상세이력]에서 해당 이력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. 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(개별사업장) 메일전승 -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개별사업장 이력 인쇄 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일전송 -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 고용/산재보험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 메일전송

고용 •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
-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선택 사업장에 대한 이력 인쇄

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예시

	자격	다. 이력니	산재보험 내역서 (험 ☑고용보험 근로자용/피브	 보험자용	:)		
발급번호	0000-2025-01 55 발급일자 2025년 01월 03일 접수번호 0000-2025-7							
신청인	성명	3	박	생년월일	년 10월 30일			
조회기간	전체 (조회기간 총 2개 이력 중 2개 이력 선택 발급 요청)							
일련번호	식종명(코드) 사업장 명칭		취득일/건	근일 성	실일	비고	i i	
1	정부·공공 행정 사 무원(025)	당행정 사 국무조정실		2024-09	-02		근로지	ł.
2							근로지	ł.

- ※ 본 자료는 산재보험·고용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/피보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,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,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이 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없이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 민원실과 금융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(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)
 발급 증명원의 진위여부 확인은 「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-국민소통-민원/조회-증명원 진위확인」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위와 같이 자격내역을 알려드립니다.

2025년 01월 03일

근로복지공단 이사장



<별지 제5호> 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(서류전형 합격자)

응시번호						
*	응시자 작성X					

지원코드	채용분야	성명	연락처
			* 휴대전화 번호 기재

□ 제출란에 ○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

연번	서류명	비고	제출
1	정책제안서 1부	별지6호 서식	
2	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	별지7호 서식	
3	서류전형 가점 사항 증빙서류	해당자에 한함	

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 2025년 월 일

작성자(응시자) :

(인/서명)

<별지 제6호> 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정책제안서

지워분야	성 명	연락처	e-mail	
110001			Cirian	

제 목	청년이 보는 00 정책 ※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·사업·제도(예: 복지, 노동, 산업, 금융 등)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
제안 배경 및 문제점(현황)	
개선안 또는 정책대안	
예상 효과	

- ㅇ 정책제안서 작성요령
-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(글자크기 : 11, 글자체 : 맑은고딕, 줄간격 : 120%)
-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
- *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,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
- *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 명	생년월일

목	록	해당여부	
1	피성년후견인	□ 해당	□ 해당없음
2	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□ 해당	□ 해당없음
3	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	□ 해당없음
4	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	□ 해당없음
(5)	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□ 해당	□ 해당없음
6	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□ 해당	□ 해당없음
7	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해당	□ 해당없음
나.	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 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		□ 해당없음
가.	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・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	□ 해당	□ 해당없음
10	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	□ 해당없음
11)	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	□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5. . .

성명: (서명)

재외동포청장 귀하